1. 개정이유

예대율 산출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증개지원대출,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대출 등 12종을 제외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원화예대율 산정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 원대출,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대출 등 12종 제외(안 제26조 1항 3호 마목에서 너목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6조제1항제3호에 마목에서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마. 한국은행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(한국은 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한도로 함)
- 바. 「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」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
- 사. 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에 따라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 용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
- 아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대출
- 자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및 「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 법」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에 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
- 차.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취급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

- 카.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기본법」,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 및 「환경개선사업자금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」에 따라 취급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대출
- 타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차 입한 자금을 이용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대출
- 파.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대출
- 하.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에 따라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
- 거.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기본법」,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 및 「환경개선사업자금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」에 따라 취급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(구, 환경정책자금) 대출
- 너. 한국무역협회가 조성한 무역진흥자금으로 취급된 무역진흥자금 대출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경영지도비율) ① 은행은	제26조(경영지도비율) ①
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	
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	
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호의 경	
영지도비율은 직전분기말월의	
원화대출금이 2조원 미만인 은	
행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	
다.	.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원화예수금(양도성예금증서	3
를 제외하고, 외국은행지점의	
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을	
기금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	
본지점 장기차입금을 포함한	
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과	
「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	
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발	
행만기 5년 이상의 이중상환	
청구권부채권 잔액(채권 발행	
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	
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,	
그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	
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	
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)	

과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 서 잔액[원화시장성 양도성예 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 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 0분의 1로 한다. 이 경우 발행 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 의 양도성예금증서(이하 "지 표물 양도성예금증서"라 한 다)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00 분의 50을 가산하고,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 이외의 양도 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 금은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산출한다]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(다음 각 목의 대 출을 제외한다) 비율(이하 "원 화예대율"이라 한다). 이 경우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기업 자금대출(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제외)은 100 분의 15를 차감하고, 가계자금 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하 여 산출한다. 다만, 2020년부 터 2021년 9월까지 신규 취급 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

금대출(주택임대업·주택매매 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제외한 다)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, 2020년 이후 신규 취급된 주 택임대업·주택매매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 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한 다.: 100분의 100 이하 가. ~ 라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u>마. 한국은행의 차입금을 재</u> 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대출(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한도로 함)

바. 「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」에 따라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시 장진흥기금 대출

- 사. 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 에 따라 정부로부터 차입 한 자금을 이용한 관광진 흥개발기금 대출
- 아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소벤처기 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u><신</u> 설>

한 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대출

자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및 「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」에 따라 한국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차입 한 자금을 이용한 에너지 이용합리화자금 대출

차.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에 따라 취급된 지방중소 기업 육성자금 대출

 카.
 「환경정책기본법」,

 「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
 기본법」,

 법」,
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,

 산업 지원법」,
 「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」,

 설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」,
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

 설원법」 및
 「환경개선사업가 대여 및 운용에 관한약정」에 따라 취급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대출

다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

<u><신</u>설>

<신 설>

<신 설>

<u>이용한 산업재해예방시설</u> <u>자금 대출</u>

- 파.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대출한.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에 따라 도시가 스공급배관건설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
- 거.
 「환경정책기본법」,

 「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

 소중립·녹색성장
 기본

 법」,
 「환경기술 및 환경

 산업 지원법」,
 「자원의

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
 법률」,

 법률」,
 「한국환경산업기

 술원법」 및
 「환경개선사

 업자금 대여 및 운용에 관
 한 약정」에 따라 취급된

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
 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

 한 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
 (구, 환경정책자금) 대출

<u> <신 설></u>	너. 한국무역협회가 조성한
	무역진흥자금으로 취급된
	<u>무역진흥자금 대출</u>
4.•5. (생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